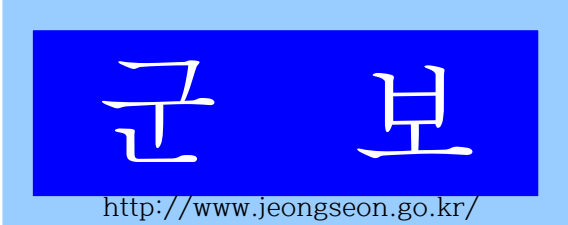




정 선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650호 2024. 1. 3. (수)

【고 시】

- 정선군 고시 제2023-113호 정선군 조동1.2리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시행계획(변경) 수립 고시.....1
- 정선군 고시 제2023-117호 정선 군계획시설사업(도로:소로1-국42C)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.....4

【공 고】

- 정선군 공고 제2023-1487호 정선(신동) 군계획시설사업(하천:고성천) 공사 완료 공고.....6
- 정선군 공고 제2023-1490호 정선군 군계획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.....7
- 정선군 공고 제2023-1506호 정선(고한) 군관리계획(시설:주차장) 결정(변경)(안) 재공람 .공고.....10

□ 발행 : 정선군청 기획관 (전화:560-2213, FAX:560-2592)

고 시

정선군 고시 제2023-113호

정선군 조동1.2리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시행계획(변경) 수립 고시

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, 위생 등 긴요한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, 주민역량 강화 등 지원을 위하여 추진중인 『정선군 조동1.2리(길운마을)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』에 대하여 「농어촌정비법」 제59조 규정에 의거 시행계획을 변경 승인하고,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12월 21일

정 선 군 수

- 1. 사업의 명칭 : 정선군 조동1.2리(길운마을)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
- 2. 사업의 배경 및 목적
 - 안전·위생 등 긴급한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, 휴먼케어 활동 및 주민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
- 3. 사업비 변경 2,445,000천원
 - (당초) 2,241,237천원 [국비 (1,583,000), 지방비 (546,000), 자부담 (112,237)]
 - (변경) 2,445,000천원 [국비 (1,583,000), 지방비 (796,000), 자부담 (66,000)]
- 4. 주요사업내용
 - 위 치 : 정선군 신동읍 조동1.2리 길운마을 일원
 - 노후주택정비
 - 슬레이트 지붕개량, 빈집철거, 집수리

- 안전·위생 및 기초생활 인프라
 - 길운천 제방정비, 통행로 안전확보, 안전한 마을조성, 소규모 주차장 조성, 도보환경개선, 노후 급수관 정비
- 주민공동시설 및 경관시설 정비
 - 길운 커뮤니티공간 조성, 조동2리 경로당 리모델링 및 목욕탕조성, 분리수거장 조성, 마을취약지역 정비
-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
 - 휴먼케어, 주민역량강화

5. 사업시행자 : 정선군수(위탁시행자 : 한국농어촌공사)

6. 사업기간 변경

- (당초)2020년 ~ 2023년(4년) → (변경)2020년 ~ 2024년 8월 (4년 8개월)

7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 도시과 (033-560-247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별첨]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이전 계획		금회 계획		증감 내역		증감사유
	사업량	사업비	사업량	사업비	사업량	사업비	
총 계		2,241 <112>		2,445<6 6>		204 <△46>	
◇ 노후주택정비		546		644		98	
- 슬레이트지붕개량	16호	219 <52>	12호	132 <15>	△4호	△87 <31>	사업량 감소
- 주택수리	27호	252 <60>	27호	321 <48>	-	69 <12>	-
- 빈집철거	17호	75	21호	191	4호	116	사업량 증가
◇ 안전·위생확보		689		720		32	
- 길운천 제방정비	1식	30	1식	247	1식	217	사업량 조정
- 통행로 안전확보	1식	95	1식	177	1식	82	사업량 조정
- 안전한 마을조성	1식	155	1식	48	1식	△107	사업량 조정
- 소규모 주차장조성	2개소	91	1개소	51	1개소	△40	사업량 조정
- 도보환경개선	1개소	313	1개소	178	1개소	△135	사업량 조정
- 재래식 화장실정비	5호	4	8호	19	3호	16	
◇ 기초생활인프라		63		64		1	
- 노후급수관정비	176m	63	176m	64	-	1	
◇ 주민공동시설		428		496		68	
- 길운 커뮤니티 공간조성	167㎡	198	167㎡	280	-	82	
- 조동리 경로당 리모델링	83㎡	230	93㎡	216	10㎡	△14	
◇ 경관정비시설		36		51		15	
- 분리수거장 조성	2개소	16	2개소	16	-	-	
- 마을취약지역 정비	1식	20	1식	35	-	15	
◇ 역량강화		70		86		16	
- 휴먼케어	1식	30	1식	53	-	22	준공백서용역 포함
- 지역역량강화	1식	40	1식	33	-	△7	
◇ 제경비		409		384		△22	
- 기본계획비	1식	19	1식	19	-	-	
- 세부설계비	1식	69	1식	69	-	-	
- 공사감리비	1식	160	1식	161	-	1	요율정산
- 사업관리비	1식	31	1식	31	-	-	
- 석면조사비	1식	8	1식	8	-	-	
- 안전진단	1식	35	1식	35	-	-	
- 준공백서	1식	20	-	-	△1식	△20	역량강화에 포함
- 잡지출	1식	67	1식	61	-	△6	

정선군 고시 제2023-117호

정선 군계획시설사업(도로:소로1-국42C)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

강원도 고시 제2010-228호(2010. 7. 23.)로 최초 결정 고시된 정선 군계획시설(도로:소로1-국42C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12월 29일

정 선 군 수

- 1. 위 치: 정선군 북평면 장열리, 여량면 여량리 일원
- 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 - 가. 종 류: 군계획시설사업(도로:소로1-국42C)
 - 나. 명 칭: 국도42호선 정선-북면간 2차로 시설개량공사
- 3.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

시설명	군계획시설 결정		실시계획 인가	비고
	세부시설명	연장·폭원	금회시행	
교통시설 (도로)	소로1-국42C	L=4,178m, B=10 ~ 22.0m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L=1.500m, B=10 ~ 22.0m ▪ A=33,347㎡ 	

- 4. 사업시행자 및 주소
 - 가. 성 명: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
 - 나. 주 소: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 50(반곡동)
- 5. 사업기간
 - 가. 당 초 : 실시계획인가일 ~ 2023. 12. 31.
 - 나. 변 경 : 실시계획인가일 ~ 2024. 12. 31.
- 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, 지번, 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

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관리자의 성명, 주소: 생략(변경없음)

7.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: 해당사항 없음

공 고

정선군 공고 제2023-1487호

정선(신동) 군계획시설사업(하천:고성천) 공사 완료 공고

정선군 고시 제2016-25호(2016. 4. 15.)로 최초 결정되어 정선군 고시 제2019-45호(2019. 3. 15.)로 변경 결정된 정선(신동) 군계획시설(하천:고성천)에 대하여 정비사업 완료에 따라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 완료 공고합니다.

2023년 12월 22일

정 선 군 수

- 1. 위 치 : 정선군 신동읍 고성리 403-2번지 일원
- 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 - 가. 종 류 : 군계획시설사업(하천:고성천)
 - 나. 명 칭 : 정선(신동) 군계획시설 [하천(고성천):소하천] 정비사업
- 3.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

시설명	군계획결정		실시계획인가	비고
	세부시설명	연 장	금회 시행	
하천 (고성천)	소하천	L=6.38km	L=0.35km (양안 : 0.70km)	

- 4. 사업시행자 및 주소
 - 가. 성 명 : 정선군수(건설과)
 - 나. 주 소 :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
- 5. 사업기간
 - 가. 착수일 : 2022. 6. 10.
 - 나. 준공일 : 2023. 11. 24.

정선군 공고 제2023-1490호

정선군 군계획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「정선군 군계획 조례」 제58조 규정에 의거 정선군 군계획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분야별 전문가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.

2023년 12월 22일

정 선 군 수

- 1. 모집분야 : 도시계획·토목·토지이용·건축·주택·교통·환경·방재·문화·농림·경관·정보통신·사회·문화 등
- 2. 모집인원 : 00명
- 3. 위촉기간 : 2024. 2. 13. ~ 2026. 2. 12.(2년, 3회 연임 가능)
- 4. 위원회 기능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과 「정선군 군계획 조례」 및 다른 법령 등에서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등
- 5. 위원자격 : 도시계획 관련 모집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- 가. 대학교의 관련학과 조교수급 이상
 - 나.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(박사학위 취득신고 자)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
 - 다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기술사 또는 「건축사법」에 의한 건축사로 당해 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
 - 라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모집분야 기사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 수행한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에 따른 특급기술자
 - 마.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모집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
 - 바. 모집분야 공무원의 경우 5급 이상 근무경력 5년 이상
 - 사. 공기업(공사) 부장급 이상으로 해당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실무 경험이 있는 자

6. 선정기준

- 가.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
- 나. 해당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, 위원회 활동 경력이 풍부한 자
- 다. 성별, 연령별, 대학별 등으로 적정한 인원 선정
- 라. 심의 및 자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
- 마. 기타 참고사항
 - ▶ 기술사, 건축사 등 관내 현업 종사자는 제한될 수 있음
(단, 타 지역 현업 종사자 위촉이 곤란한 경우 예외)
 - ▶ 다른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으로 다수 활동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음
(단, 인력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복위촉 가능)
 - ▶ 기타 선정기준 등에 부적합한 지원자는 위원 선정 제외

7. 제출서류

- 가. 공개모집 지원서 및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각 1부.
- 나. 소속기관장 추천서(소속기관장 추천 시)
- 다. 기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재직증명서, 경력증명서, 자격증 등)
 - ※ 재직증명서·경력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된 것에 한하며, 자격, 경력 등의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.

8. 모집기간 및 접수처

- 가. 모집기간 : 2023. 12. 22.(금) ~ 2024. 1. 10.(수) 18:00까지
- 나. 접수방법 : 방문접수(공휴일 제외), 우편접수(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), 전자우편(e-mail) 접수 가능
- 다. 접 수 처 : 정선군청 시설국 도시과 도시계획팀(전인수 주무관)
 - 주 소 : 우)26131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도시과
 - e-mail : jninsoo@korea.kr

9. 심사 및 통지 : 적격자 심사 후 위촉 대상자만 개별 통지

10. 기타사항

- 가. 제출서류에 해당되는 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,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- 나.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(3회 연임가능)이며, 정선군 거주자와 여성위원(위촉직 위원 총수 40% 범위)은 우선 선정할 수 있음
- 다. 해당 분야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

- 라.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
- 마.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함
- 바. 위원회 명단이 우리 군의 방침에 따라 소속과 성명이 공개될 수 있음
- 사. 3회 이상 연속 불참 등 참여율 저조 시 해촉 검토할 수 있음
- 아. 기타 자세한 사항은 「정선군 군계획 조례」 및 「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」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 문의 사항은 정선군 도시과(☎ 033-560-213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정선군 공고 제2023-1506호

정선(고한) 군관리계획(시설:주차장) 결정(변경)(안) 재공람공고

정선(고한) 군관리계획(시설:주차장)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 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12월 29일

정 선 군 수

1. 계획의 개요

- 공람목적 : 고한12리 하이원스키장 진입로 및 고한17리 일원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주차타워 조성을 위한 “정선(고한) 군관리계획(시설:주차장) 결정(변경)(안)” 에 대한 주민의견 재청취
- 위 치 :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20-5번지 일원
- 사업내용 : 정선(고한) 군관리계획(시설:주차장) 결정(변경)(안)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 설 명	위 치	면 적 (㎡)	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4	주차장	고한읍 고한리 120-5번지 일원	3,096	증) 1,186	4,282	강원도고시 제207호 (98.10.15)	-
변경	5	주차장	고한읍 고한리 104-3번지 일원	1,722	증) 947	2,669	“	-

2. 공람기간 및 장소

- 공람기간 : 2023. 12. 29. ~ 2024. 1. 12.(계재일로부터 14일간)
- 공람장소 : 정선군청 시설국 도시과, 고한읍 행정복지센터
- 공람내용 및 관계도서(공람장소 비치)
 - 정선(고한) 군관리계획(시설:주차장) 결정(변경)(안) 도서

- 3.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 : 정선군청 시설국 도시과, 고한읍 행정복지센터로 서면 제출
- 4. 기타사항 :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도시과(033-560-213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아울러 본 제공람·공고(안)은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며,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■ 편입토지조서(고한12리_주차장 4)

연번	위치	지번	지목	면 적 (㎡)				소 유 자		이해관계인			비고
				공부	기정	증감	변경	성명	주소	성명	주소	권리의 종류 및 내용	
1	고한읍 고한리	120-5	주차장	2,894	1,809	증) 540	2,349	정선군					
2	고한읍 고한리	120-23	대	867	184	증) 165	349	정선군					
3	고한읍 고한리	120-48	주차장	97	97	-	97	정선군					
4	고한읍 고한리	121-19	대	1,969	956	증) 257	1,213	정선군					
5	고한읍 고한리	124-9	전	119	19	증) 100	119	정선군					
6	고한읍 고한리	산1-93	임야	191	31	증) 124	155	정선군					
계				6,137	3,621	증) 1,186	4,282						

■ 편입토지조서(고한17리_주차장 5)

연번	위치	지번	지목	면 적 (㎡)				소 유 자		이해관계인			비고
				공부	기정	증감	변경	성명	주소	성명	주소	권리의 종류 및 내용	
1	고한읍 고한리	104-3	주차장	1,880	551	-	551	정선군					
2	고한읍 고한리	104-52	대	353	243	증) 7	250	정선군					
3	고한읍 고한리	104-55	도로	49	12	증) 37	49	정선군					
4	고한읍 고한리	104-60	대	936	331	증) 519	850	정선군					
5	고한읍 고한리	104-63	도로	168	130	증) 14	144	정선군					
6	고한읍 고한리	104-68	대	617	236	증) 109	345	정선군					
7	고한읍 고한리	산1-129	임야	2,508	101	증) 261	362	정선군					
8	고한읍 고한리	산1-130	철도	2,293	118	-	118	국(국토교통부)					
계				8,804	1,722	증) 947	2,669						